

의안번호	2215749
의 퇴 인	여기구 의원
회 답 일	2026. 1. 14.
추 계 번호	25B7431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8조(조합의 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제3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66조제3항의 검사인 및 제4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67조의 검사인(이하 “검사인”이라 한다), 제5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1항) <삭제>1. 조합을 설립할 때 조합원의 수, 출자금의 인수(引受), 출자금의 납입 또는 제11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법원이나 총회(창립총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하였을 때 <삭제>3.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여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하였을 때 검사인 또는 제5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2항 신설) 1. 조합을 설립할 때 조합원의 수, 출자금의 인수(引受), 출자금의 납입 또는 제11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법원이나 총회(창립총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하였을 때 2.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여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하였을 때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58조(조합의 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현행법¹⁾은 「상법」에 따른 검사인 또는 선주상호보험조합의 발기인, 이사, 감사 등이 조합을 설립할 때 조합원의 수, 출자금의 인수(引受), 출자금의 납입 또는 사업기금의 총액 등 사업기금에 관한 사항, 출자자 등이 가지는 권리, 설립비용의 상각 방법에 관하여 법원이나 총회(창립총회를 포함함)에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하였을 때 또는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여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하였을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조합을 설립할 때 조합원의 수, 출자금의 인수(引受), 출자금의 납입 또는 사업기금의 총액 등 사업기금에 관한 사항, 출자자 등이 가지는 권리, 설립비용의 상각 방법에 관하여 법원이나 총회에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 또는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여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한 경우에 대한 벌칙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 현행 형벌에 따른 벌금은 법무부의 수입이 되나, 법무부에 따르면 형벌 규정에 따른 벌금 수입을 형벌의 근거가 되는 개별법률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현행 조항으로 인한 벌금 수입의 현황을 알 수 없으므로, 개정안 시행으로 인한 벌금 수입의 감소 등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1) 제58조(조합의 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제3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66조제3항의 검사인 및 제4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67조의 검사인(이하 "검사인"이라 한다), 제5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조합을 설립할 때 조합원의 수, 출자금의 인수(引受), 출자금의 납입 또는 제11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법원이나 총회(창립총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하였을 때
2. 누구의 명의로든 조합의 계산으로 부정하게 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지분을 받았을 때
3.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여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하였을 때
4. 조합의 사업 범위를 벗어나 투기거래를 하기 위하여 조합의 재산을 처분하였을 때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김성원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성원	02-6788-4650	holyone@assembly.go.kr